

한국교회 신뢰회복 프로젝트 세미나

한국교회 목회자 사례비 불평등 문제와 표준사례비 제안

발제1. 한국의 목회자 사례비 격차에 관한 연구

류재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제2. 한국 목회자 사례비 표준에 대한 요구와 실제적 대안

신동식(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

사회

김상덕(한신대 연구교수)

2024년 11월 26일(화) 저녁 7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에홀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명진 간사(02-794-6200, cemk@hanmail.net)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교회 신뢰회복 프로젝트 세미나

“한국교회 목회자 사례비 불평등 문제와 표준사례비 제안”

┃ 발간일 2024년 11월 25일

┃ 편 집 이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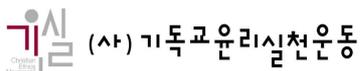
┃ 디자인 이명진

주소 (04382)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홈페이지 www.cemk.org 전화 02-794-6200 메일 cemk@hanmail.net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순서 및 목차

Ⅰ 사회 - 김상덕 (기윤실 상집위원, 한신대 연구교수)

Ⅰ 발제

발제1.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에 관한 연구 4p
-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제2. 한국 목회자 사례비 표준에 대한 요구와 실제적 대안 36p
- 신동식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 빛과소금교회)

Ⅰ 질의 및 토의

발제1.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에 관한 연구

2024.11.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부연구위원



CONTENTS.

CHAPTER.1

배경 및 목적

CHAPTER.2

선행연구 검토

CHAPTER.3

목회자의 소득분포
추정

CHAPTER.4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
분석

CHAPTER.5

결론 및 시사점

1. 배경 및 목적

배경

- 목회자의 사례(謝禮, compensation)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

- 사례에 관한 이론적 연구

- 성경에 근거하여 사례의 본질에 대해 연구, 사례 지급의 정당성, 사례의 범위와 종류, 수준 등을 연구(Harvey, 1982; Boyo, 1994 등)

- 목회자의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 목회자와 다른 직업 사이의 임금 격차, 목회자들 내의 사례비 불평등 등의 현상에 집중

- 목회자들의 생활 수준 유지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례비 지급 체계에 관한 연구

- 목회자 집단이 노후에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에 주목하여 적절한 사례비 체계와 연금 체계(은급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

- 전세계 여러 교단들이 적정 사례비 지급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

※ 연합 그리스도 교회(The United Church of Christ),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

미국침례교회(American Baptist Church), 성공회(The Episcopal Diocese) 등)

1.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목회자의 사례비에 관한 실증 연구는 물론 이론적 논의도 찾기 어려움
 -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사례비 분포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 목회자의 삶의 질 개선,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부재

연구 목적

① 사례비 분포 추정

- 이용하(2003),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2015),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등을 이용

② 목회자 내 사례비 격차 확인

- 「한국노동패널조사(12-17차)」를 이용한 패널 분석

③ 사례비 지급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제시

2. 선행연구 검토

목회자의 사례비와 관련된 실증 연구

- 2000년 이후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들이 등장
- 주로 행정자료와 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

목회자의 사례비에 관한 실증 연구 정리

선행 연구	이용 자료	분석 모형	종속 변수	연구 결과
McMillan and Price(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lpit & Pew National Pastoral Leader Survey • CPS(Current Population Surveys) (1976-1999) 	O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비 + 주택보조금 	목회자(-), 도시(+) 소속된 교단의 크기(+)
Trawick and Lile(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feway Resources(Baptist Sunday School Board), • Churches and Church membership 	O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비 	시장집중도(+) 도시(-)
Hartzell et al.(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hodist ministers in the state of Oklahoma (1961-2003) 	Fixed eff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비 • 사례비 변동 	교인의 수(+)
Schleifer and Chaves(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S(Current Population Surveys) (1976-2013) 	O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비 	목회자(-), 여성(-), 도시(+), 백인 외 인종(-), 소속된 교단의 크기(+), 교인 수(+)

자료: 저자 작성

2. 선행연구 검토

주요 결과

- 일반 근로자에 비해 성직자의 소득이 낮음(Hudnut-Beumler, 2007; McMillan and Price, 2003)
 - 동일한 교육 수준의 일반 근로자에 비해 성직자(clergy)의 소득이 낮음
- 여러 격차가 존재
 - (성별 격차) 여성에 대한 종교적·제도적 차별의 잔재(Smith, 2014: 485)
 - (도시-농촌 간 격차) 도시 지역의 사례비가 높음(McMillan and Price, 2003; Schleifer and Chaves, 2016 등)
 - Smith(2014: 485)는 다수의 농촌 지역 목회자가 자녀의 교육비, 자신의 빚, 은퇴 준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면, Trawick and Lile(2007)는 시골 지역의 사례비가 더 높다고 주장 (:: market power)
 - (성도 수에 따른 격차) 교회의 크기는 사례비 격차의 주된 요인 (Hartzell et al., 2010; McMillan and Price 2003; Schleifer and Chaves, 2016 등)
 - 예) Hartzell et al.(2010)는 출석 교인의 수가 10% 증가할 때마다 사례비가 평균 2.1% 증가한다고 주장

3. 목회자의 소득분포 추정

소득 분포 추정 방법

- 자료의 부재로 인해 목회자의 소득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조사자료 및 행정자료*에서는 목회자 특정이 불가능(*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청, 소득세표본자료 등)
- 이 논문에서는 목회자 대상의 설문조사들과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종합하여 소득 분포를 추정
 - (한국노동패널조사) 표준직업분류 세분류 정보와 종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
but, 목회자 집단의 고유한 특성 정보가 부재 (목회자의 직급, 시무기간 등)

활용자료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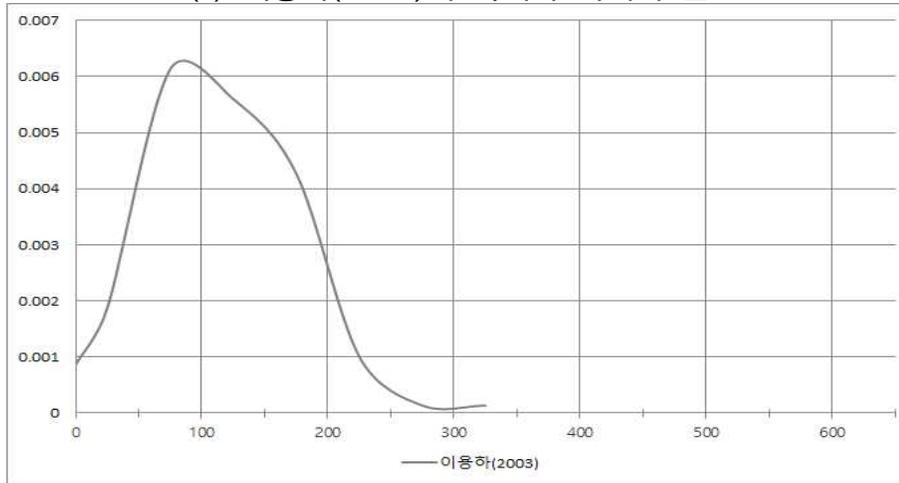
	이용하(2003)	노동패널(12-17차)	기윤실(2015)
조사 시점	2003년	2009-2014년	2015년
조사 대상	전체 성직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도시가구 5000가구	부교역자
개체수	성직자 500 (기독교 : 300)	45가구, 172개	949 (담임목사 포함 시 1367)
월평균 소득정보 제공 형태	소득구간별 상대도수	소득원천별 소득	소득구간별 상대도수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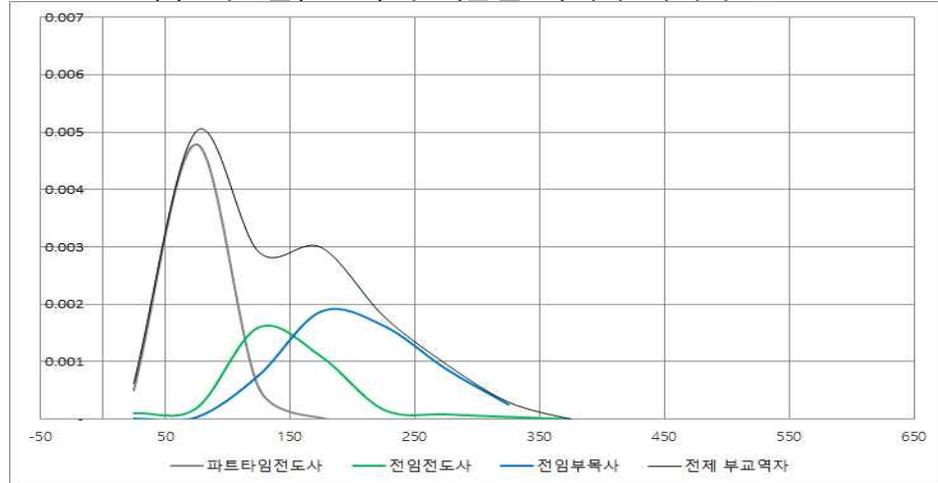
3. 목회자의 소득분포 추정

목회자의 사례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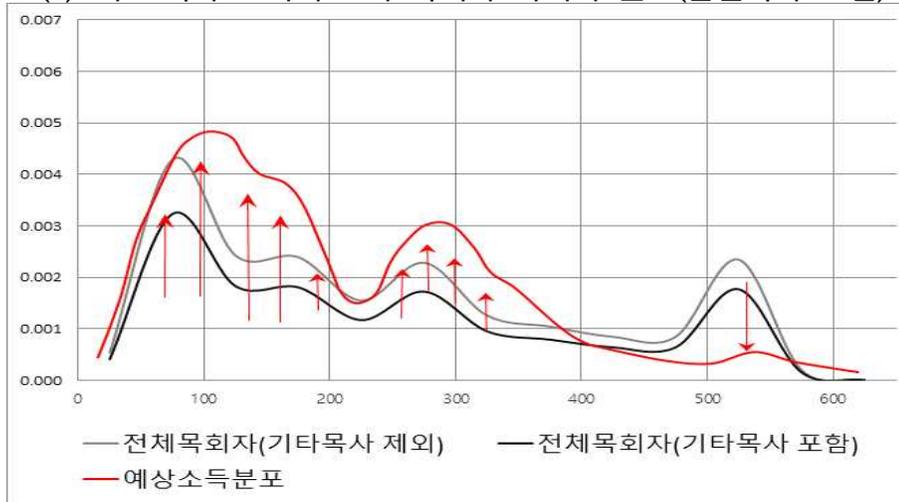
(a) 이용하(2003)의 목회자 사례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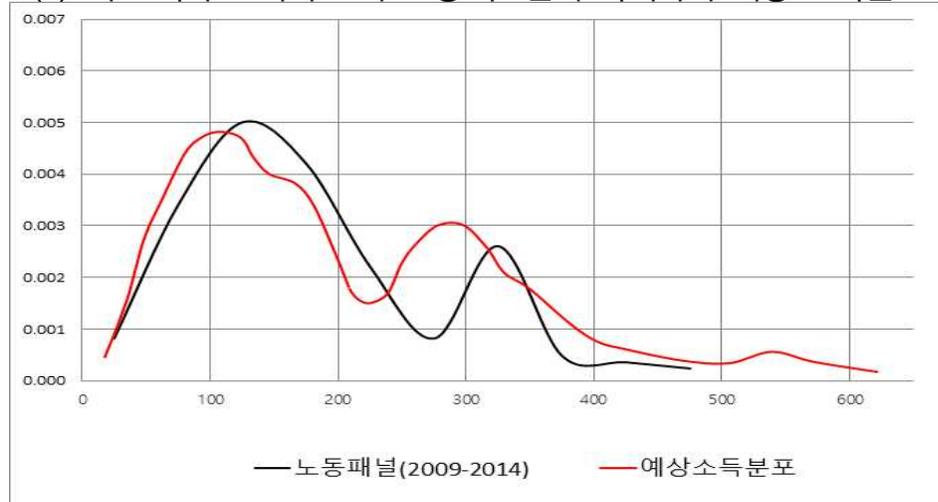
(b) 기윤실(2015)의 직급별 목회자 사례비 분포



(c) '부교역자 조사자료'의 목회자 사례비 분포(담임목사 포함)



(d) '부교역자 조사자료'의 보정 후 전체 목회자의 예상 소득분포



[참고] 부교역자 조사자료(기윤실, 2015)의 분포 보정 방법

- 기윤실(2015)은 부교역자 94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
 - 부교역자들에게 현재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들의 사례비 수준에 관해 질문
 - 소득분포 추정을 위해서는 직급별 비율 보정 필요
 - ①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비율이 높음. ② 대형교회 비율이 높음. ③ 기타 목사에 대한 정보가 부재
- 한국예수장로회의 목회자별 직급 비율을 이용하여 직급별 비율을 조정

한국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5)의 직급별 목회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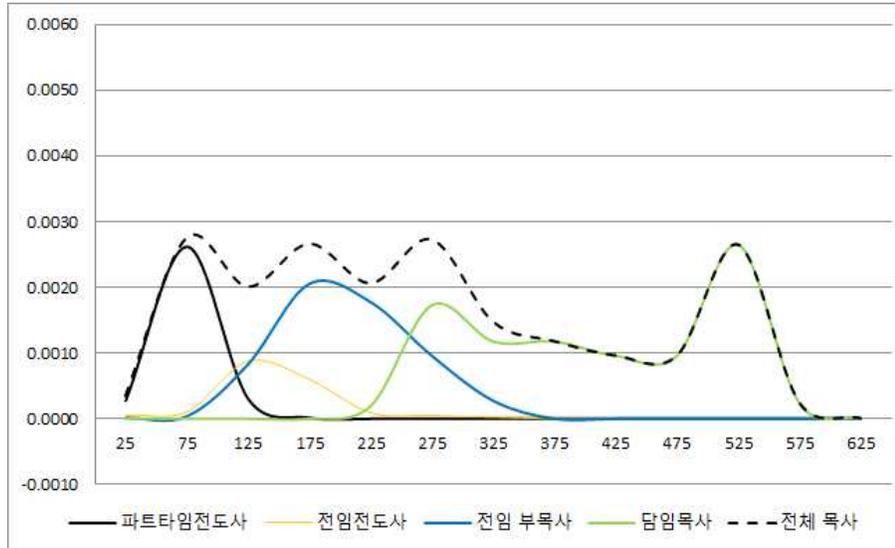
(단위: 명, %)

	한국예수교장로회총회(2015)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5)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담임목사	7,718	30.10	788	45.36
부목사	3,997	15.59	515	29.65
전도사	7,523	29.34	410	23.61
전임전도사			278	
파트타임전도사			156	
기타	6,406	24.98		
계	25,644	100.00	1,737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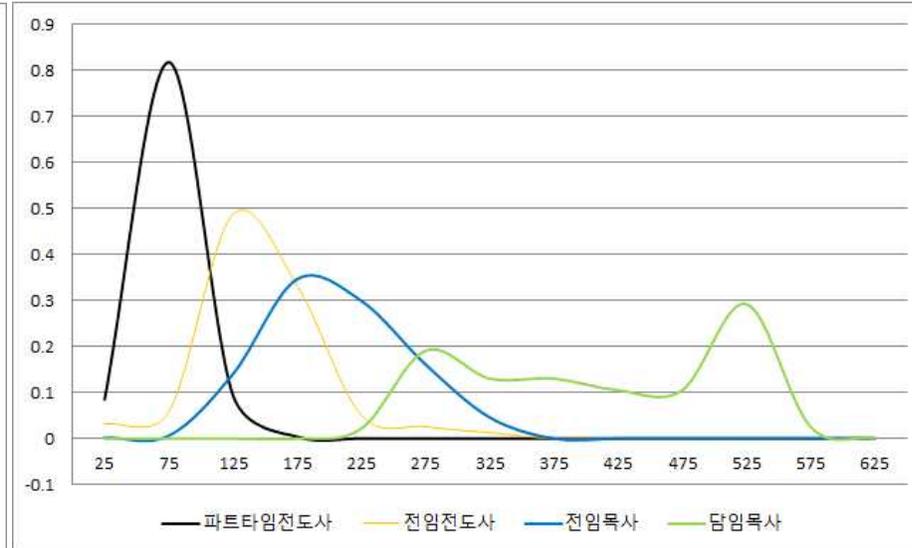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목회자의 사례비 분포(기윤실, 2015)

(a) 전체 목회자의 직급별 사례비 분포
(커널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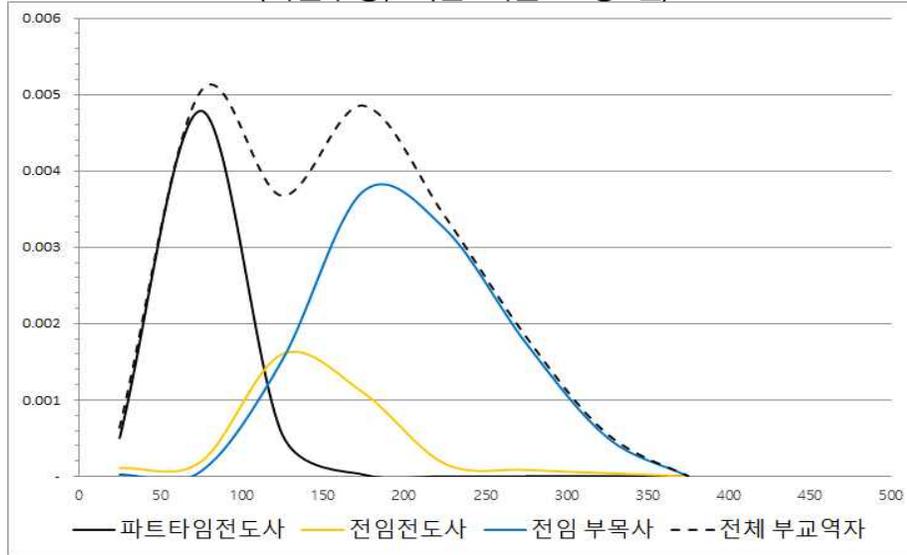


(b) 전체 목회자의 직급별 사례비 분포
(상대도수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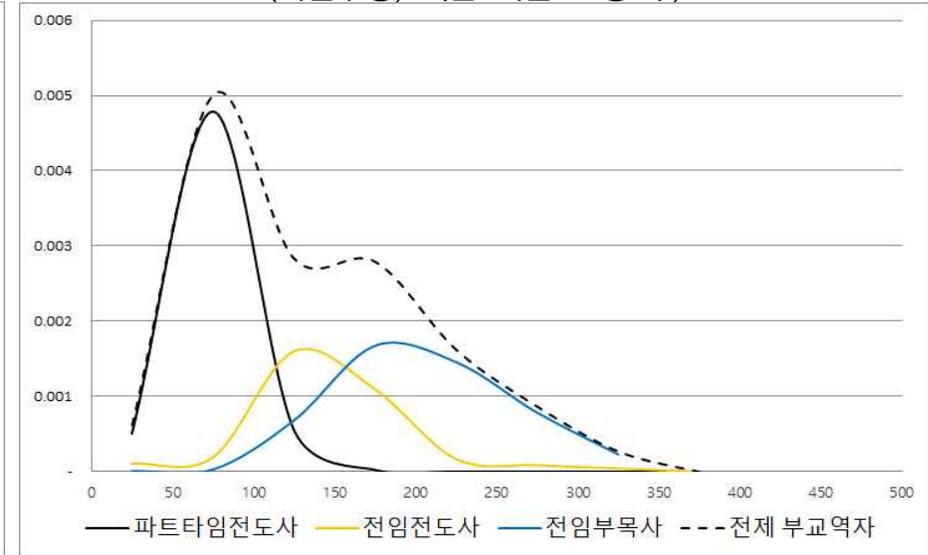


인원수 보정 후 목회자의 사례비 분포(기윤실,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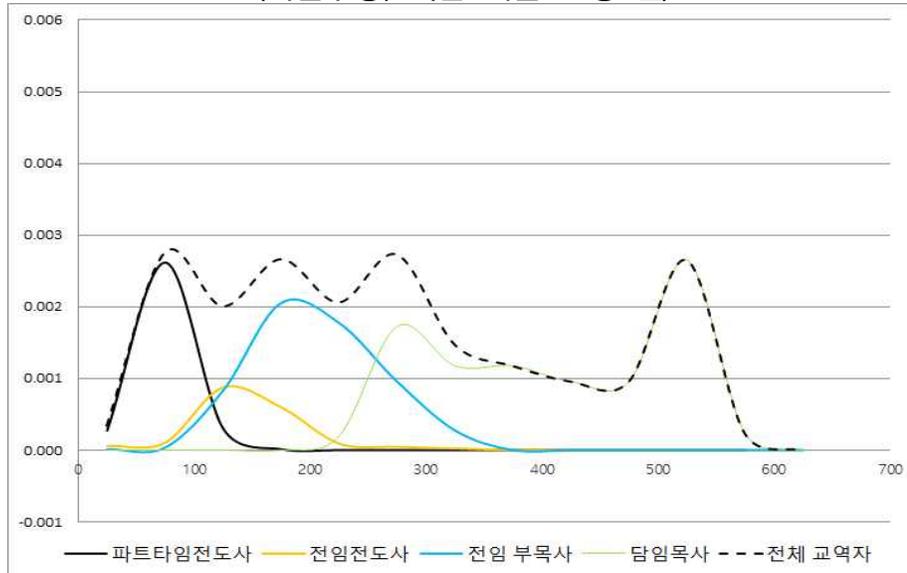
(a) 부교역자의 직급별 사례비 분포
(커널추정, 직급 비율 보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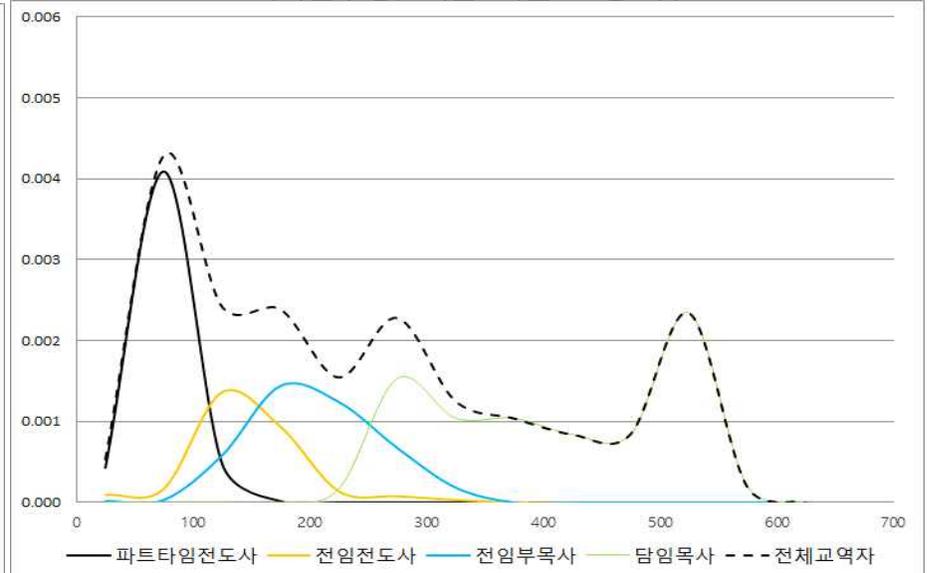
(b) 부교역자의 직급별 사례비 분포
(커널추정, 직급 비율 보정 후)



(c) 전체 목회자의 직급별 사례비 분포
(커널추정, 직급 비율 보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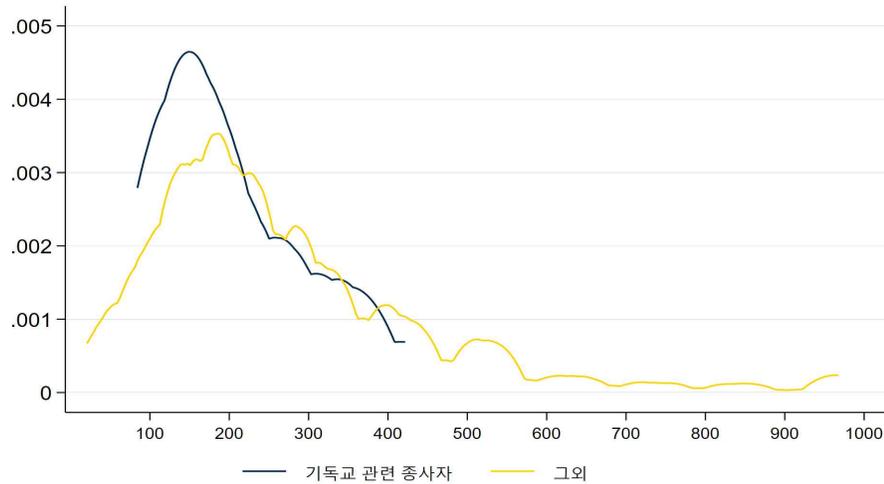
(d) 전체 목회자의 직급별 사례비 분포
(커널추정, 직급 비율 보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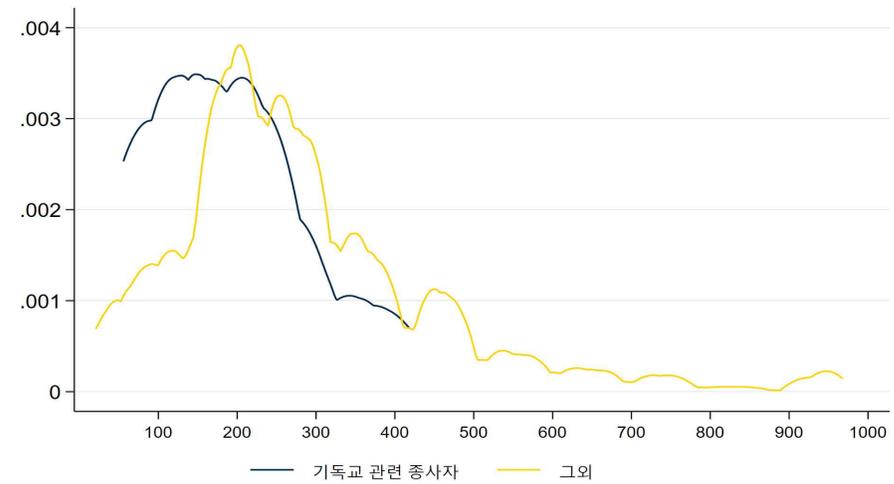
[참고] 기타자료를 통해 살펴본 목회자 소득 분포

- 한국노동패널조사: 기독교 관련 종사자(종교 관련 종사자 & 기독교인)의 소득분포를 파악
- 유희원, 한신실(2016)은 60세 미만의 성직자(개신교, 천주교, 불교) 798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조사
 - (표본추출) 종교, 교단, 지역, 연령을 고려한 표본할당추출
 - (개신교) 예장합동, 예장통합, 감리회, 기장 소속 목회자 262명
 - (소득 항목) 작년 한해(2015년) 동안의 수입을 조사

한국노동패널의 기독교 관련 종사자의 소득 분포 (2015년, 2022년)
 (a) 2015년 (b)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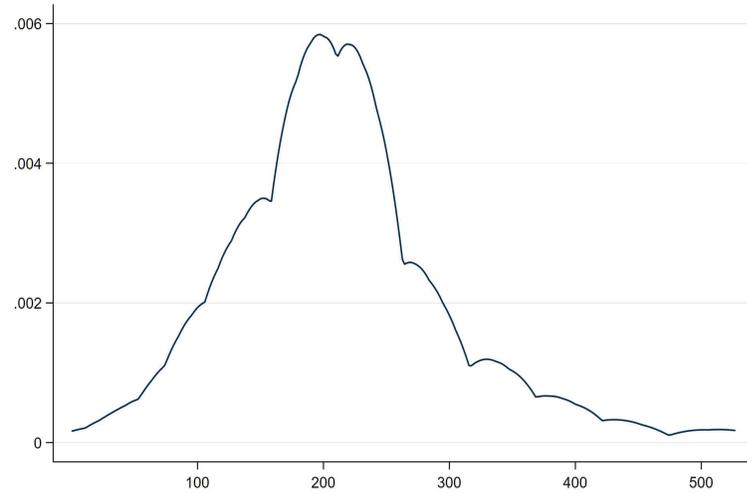
주: 1) 월평균 근로 및 사업소득(2015년 기준, 2020년 불변가)
 2) 기독교 관련 종사자는 직종이 '종교 관련 종사자' 이면서 '기독교'인 자를 의미



주: 1) 월평균 근로 및 사업소득(2022년 기준, 2020년 불변가)
 2) 기독교 관련 종사자는 직종이 '종교 관련 종사자' 이면서 '기독교'인 자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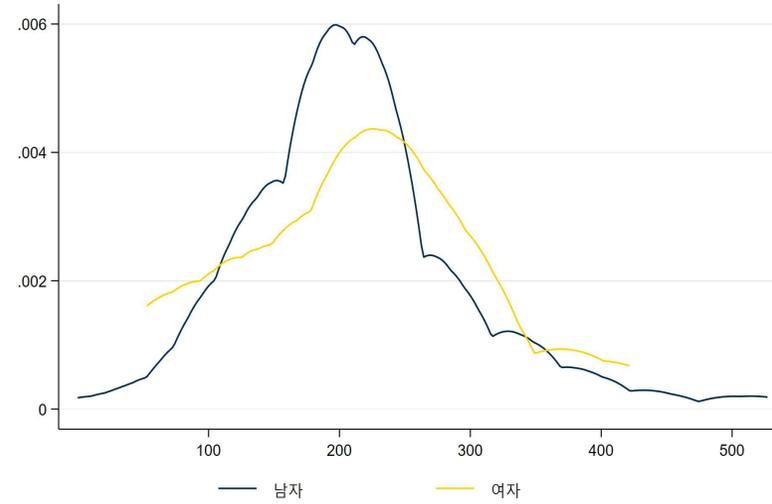
목회자의 월평균 수입(유희원, 한신실, 2016)

(a)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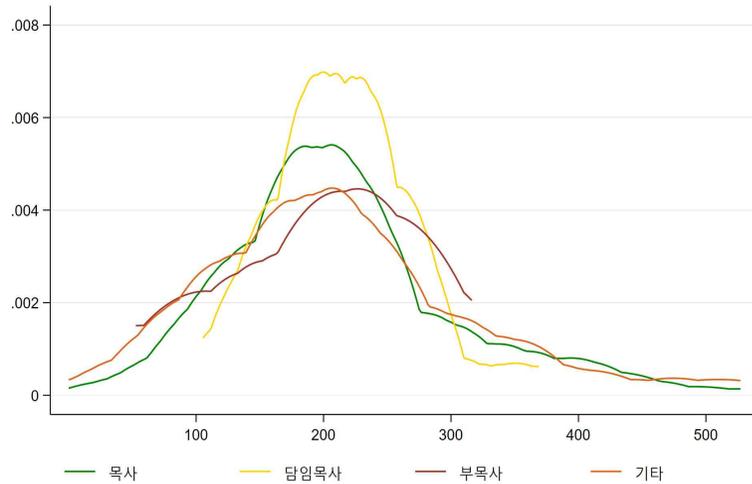
주: 1) 월평균 수입(2015년 기준, 2020년 불변가)

(b)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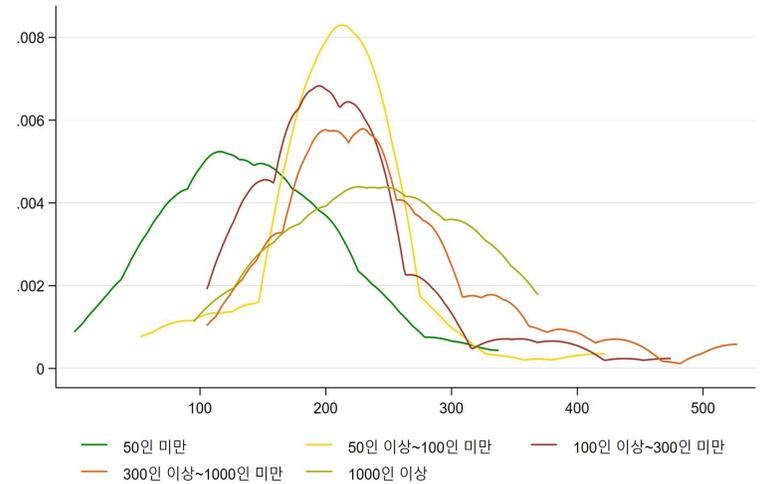
주: 1) 월평균 수입(2015년 기준, 2020년 불변가)

(c) 직급별



주: 1) 월평균 수입(2015년 기준, 2020년 불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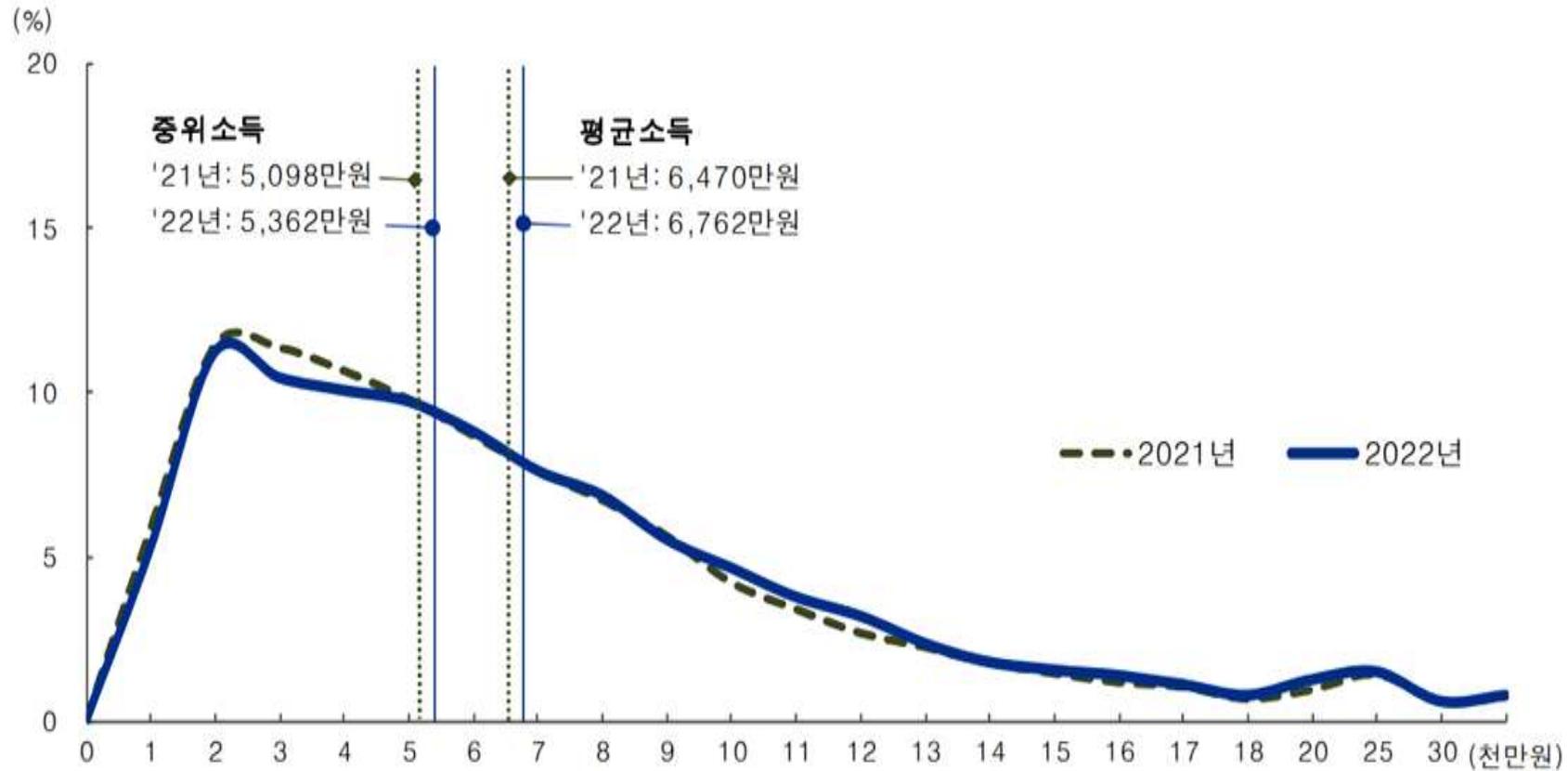
(d) 성도수별



주: 1) 월평균 수입(2015년 기준, 2020년 불변가)

[참고]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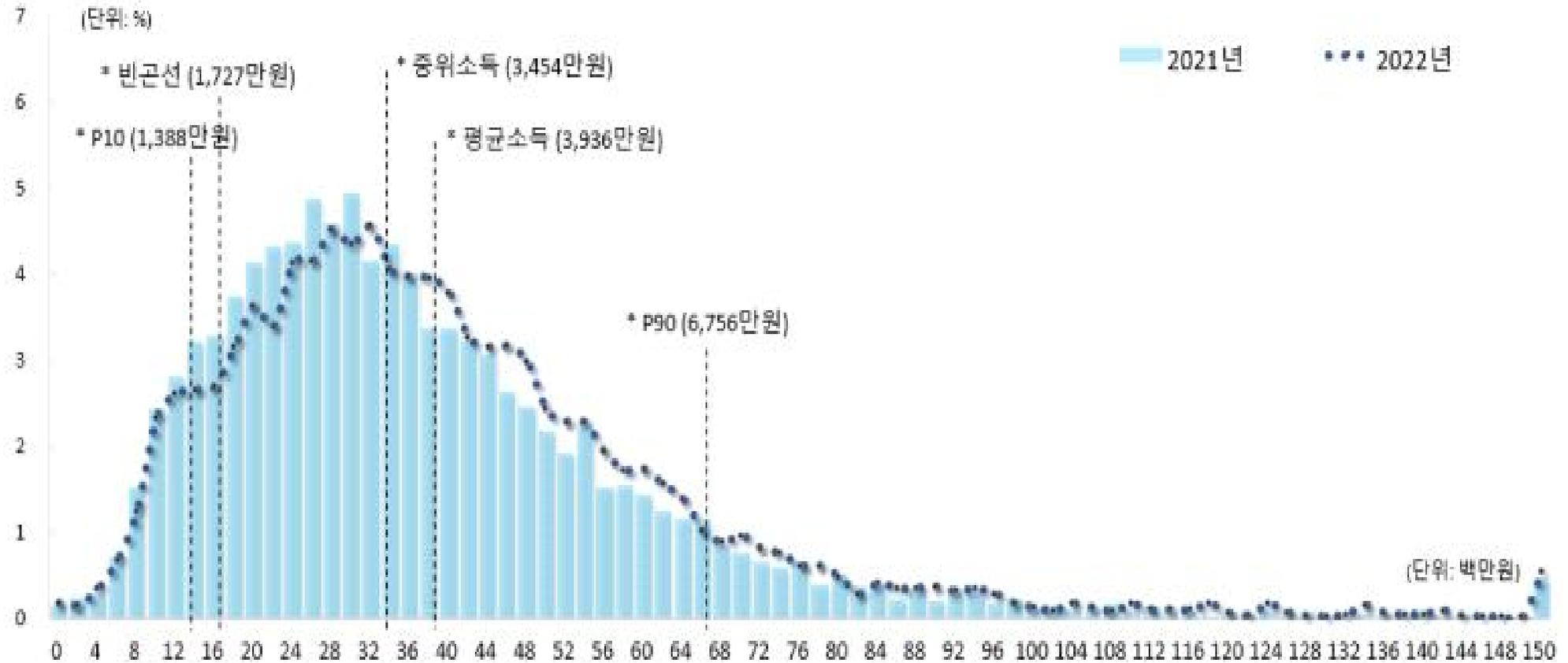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분포



주: 가구소득 = 가구에서 한 해 동안 경상적(정기적, 규칙적, 예측 가능한)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일시적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비경상소득(복권, 경조금 등)은 제외됨

자료: 통계청. (2023.12.7.).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분포



주: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자료: 통계청. (2023.12.7.).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4.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 분석

기초분석

-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이용하(2003), 기윤실(2015)

- 직급별 사례비 수준 차이
- 목회자의 직급별 사례비 수준 차이는 일반근로자의 그것보다 훨씬 큼

직급별 임금/사례비 격차

단위 : 만원, %

목회자			일반 근로자 (사무직종)		
구분	월평균 사례비	격차율	구분	월평균 임금	격차율
담임 목사	395	93.63	3직급	650	58.54
전임 부목사	204		2직급	410	
전임 전도사	148	37.84	1직급	250	64.00

자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5), 한국노동패널조사(2014년)

4.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 분석

- 교회의 크기에 따른 사례비 격차가 존재

- 목회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必 (Smith, 2014)
vs. 성도 수에 따른 격차가 없는 것이 바람직

교회 규모별 사례비 격차

(단위 : 만원, %)

부교역자			담임목사		
교회규모	월 평균 사례비	격차율	교회규모	월 평균 사례비	격차율
1000명	188	10.59	1000명	469	12.20
300-1000명	170		300-1000명	418	
300명이하	122	39.35	300명이하	321	30.22

자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5)

4.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 분석

- 남성 목회자의 사례비가 여성 목회자의 사례비보다 높음

- 직급별 비율 차이: 여성의 경우 파트 타임 전도사의 비중이 높음

성별 사례비 격차

(단위 : 만원, %)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5)			노동패널		
구분	남성	여성	구분	남성	여성
평균	163	104	평균	176.6	107.5
중위수			중위수	150	95
최대			최대	500	350

자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5), 한국노동패널조사(2014년)

4.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 분석

- 도시와 농촌 간 사례비 격차

- 대형 교회의 대다수가 도시에 위치 → 이러한 격차가 교회 규모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도농 간 사례비 격차

(단위 : 만원, %)

부교역자			담임목사		
교회규모	평균 사례비	격차율	교회규모	평균 사례비	격차율
대도시	160	0	대도시	401	1.52
중소도시	160		중소도시	395	
농어촌	127	25.98	농어촌	333	18.62

자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5) '부교역자 조사자료'

4.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 분석

분석 모형 및 자료

- (모형) 1계 자기상관을 가정한 확률효과 패널 모형(random effect model)
 - 전통적인 Mincer의 임금방정식에 몇몇 변수를 추가한 형태(Zaidi et. al., 2009)
 - Baltagi and Wu(1999)가 제시하는 GLS(generalized least squares)로 추정

$$\ln(w_{it}) = \alpha + X_{it} \cdot \beta + u_i + \varepsilon_{it} \quad (1)$$

$$\varepsilon_{it} = \rho\varepsilon_{it-1} + \nu_{it} \quad (2)$$

단, u_i : 개인 고유의 미관측 특성(unobserved attributes), $i = 1, \dots, N$; $t = 1, \dots, t$.

식(1)에서 초기의 ε_{it} 는 $\varepsilon_{it} \sim N(0, \sigma_\varepsilon^2)$ 를 따르며,

ν_{it} 는 정규분포 $N(0, \sigma_\nu^2)$ 를 따르고, σ_ν 는 $\sqrt{(1-\rho^2)} \cdot \sigma_\varepsilon$, $|\rho| < 1$, $\nu \sim iid(0, \sigma_\nu)$ 로 가정

4.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 분석

-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1~25차(2018~2022년)
- (변수 처리 및 가공)
 - 목회자는 직종이 '종교 관련 종사자' 이면서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으로 정의(Schleifer and Chaves(2016)의 방법을 차용)
 - 소득(w_{it})은 월평균 근로소득 \times 12개월로 하여 현재가치화*한 값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 cpi를 이용하여 201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
 - 목회자의 소속기관의 종류
 - 근무지가 '시민단체, 종교단체' 인 경우 교회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 그 외의 근무지(민간회사, 개인사업체, 법인단체, 무소속)등으로 답한 경우는 기타 단체로 간주
 - 소속기관의 규모는 직원의 수를 이용

4.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 분석

이용 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값	
종속변수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2020년 불변가격)의 로그값	
통제변수	개인	성별	남=0, 여=1	
		연령	만 나이	
		연령 제곱	만 나이의 제곱 값	
		가구주	가구주=1, 그 이외=0	
		교육년수	6~18년	
		혼인상태 (기준: 배우자 없음)	미취업 배우자	미취업 배우자=1, 그 이외=0
			취업 배우자	취업 배우자= 1, 미취업=0
		종사상 지위 (기준: 임시일용직)	상용근로자 더미	상용근로자=1, 그 이외=0
			고용주 더미	고용주=1, 그 이외=0
			자영자 더미	자영자=1, 그 이외=0
		실업-취업더미	실업-취업더미=1, 그 이외=0	
		비경활-취업더미	비경활-취업더미=1, 그 이외=0	
	목회자	목회자 여부		목회자 =1, 그 이외=0
		지역 더미		수도권 =1, 비수도권=0
소속기관의 규모 (기준: 10인 미만)		10~29명 미만	사업장 규모	
		30~99명 미만		
	100명 이상			

자료: 저자 작성

4.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 분석

주요 결과

- 첫째, 목회자들의 사례비 수준은 임금근로자보다 낮음(모형1).
- 둘째, 목회자의 사례비 결정요인은 일반 근로자와 다름(모형1 vs. 모형2).
 - 목회자 집단의 경우 종사상지위의 구분이 크게 의미 없으며, 학력 격차도 거의 없음
- 셋째, 목회자 집단 내 성별 격차가 존재(모형2)
 - 교육, 개인, 가구 구성 등의 기타 변수들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격차가 존재(단, 직급 및 노동시간 등은 고려되지 못함)
- 넷째, 소속기관의 규모에 따른 사례비 격차가 존재(모형2)

결과 요약

- 1) 사례비는 일반적인 시장원리와 다르게 결정됨
- 2) 특정 차원(성별, 기관 규모)에서는 목회자들 사이에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와 유사한 사례비 격차가 분명히 존재함

※ 단,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점에 유의

소득방정식 패널분석 결과(AR(1) 확률효과 GLS 모형)

구분	모형1	모형2
성별	-0.321*** (0.008)	-0.485** (0.212)
연령	0.067*** (0.002)	0.063* (0.033)
연령 제곱	-0.001*** (0.000)	-0.001** (0.000)
교육년수	0.034*** (0.001)	-0.049 (0.043)
가구주 여부	0.134*** (0.008)	0.375** (0.168)
혼인상태 (기준: 배우자 없음)	미취업 배우자 0.114*** (0.008)	-0.139 (0.230)
	취업 배우자 0.063*** (0.008)	0.027 (0.231)
종사상 지위 (기준: 임시일용직)	상용근로자 더미 0.345*** (0.007)	0.101 (0.154)
	고용주 더미 0.707*** (0.012)	0.601* (0.334)
	자영자 더미 0.508*** (0.045)	- -
목회자 여부	-0.535*** (0.047)	- -
지역 더미	0.027*** (0.007)	0.048 (0.111)
소속기관의 규모 (기준: 10인 미만)	10~29명 미만 0.071*** (0.005)	0.010 (0.084)
	30~99명 미만 0.102*** (0.006)	0.111 (0.135)
	100명 이상 0.173*** (0.006)	0.451** (0.219)
상수항	14.952*** (0.041)	15.857*** (1.086)
within R-sq	0.1154	0.1026
between R-sq	0.3149	0.3077
overall R-sq	0.1904	0.1931
Number of obs	40,027	200
Number of groups	12,671	59

- 주: 1) 종속변수는 (월평균임금(원)×12개월)을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2) 이외에도 실업-취업 더미, 비경활-취업더미, 연도더미 등을 통제함.
 3)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냄

4.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 분석

사례비 격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 사례비 격차는 인적자본, 노동시장, 조직적인 요인 등의 여러 차원의 복잡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발생(Schleifer and Chaves, 2016).
 -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요인 분해가 필요함
- 다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 (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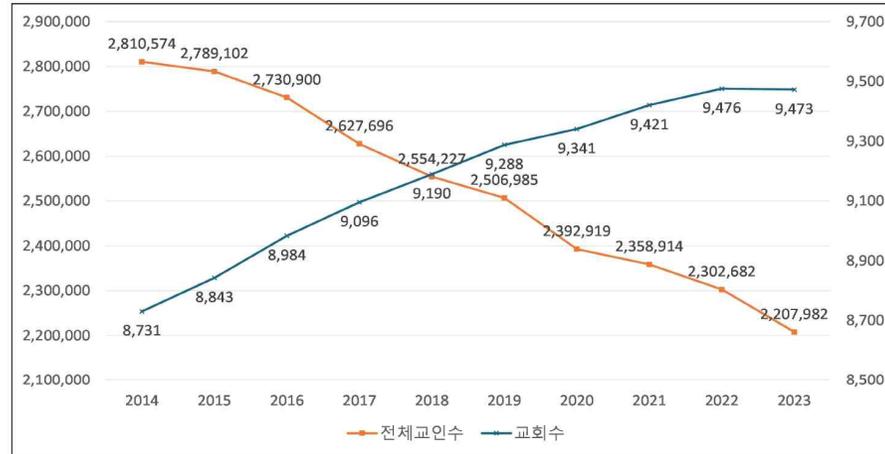
사례비 격차의 원인 1) 목회자의 과잉 공급

- 목회자의 과잉 공급 → 부교역자의 사례비 수준 하락 → 부교역자-담임목사 간의 사례비 격차 발생
 - ※ 국부론 1권 10장 : 성직자의 소득 하락과 관련된 예시
- 목회자의 경우 교육 수준은 높지만 직업 전환이 거의 불가능한 점, 교회와 목회자들의 교섭력이 비대칭적이라는 점도 부교역자의 사례비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
- 그간의 사례비 격차는 향후 노후소득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부교역자의 초과 공급 → 부목사 재임기간 증가, 생애기간 동안의 총 소득 & 저축 ↓ → 노후소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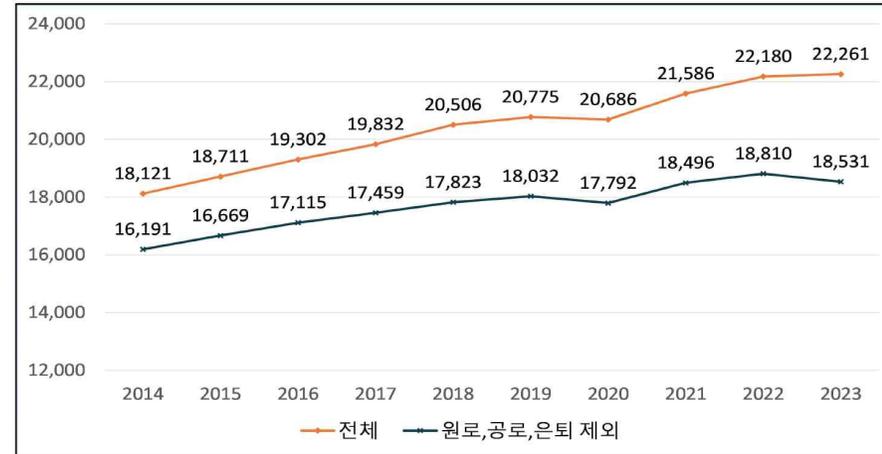
[참고]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세 변화

- (전체 교인수) 2014년 281만 명 → 2023년 221만 명 / (교회 수) 2014년 8,843개 → 2023년 9,473개
- (목사 수) 2014년 18,121명 → 2023년 22,510명 / (전도사 수) 2014년 7,523명 → 2023년 4,973명

(a) 전체 교인 수와 교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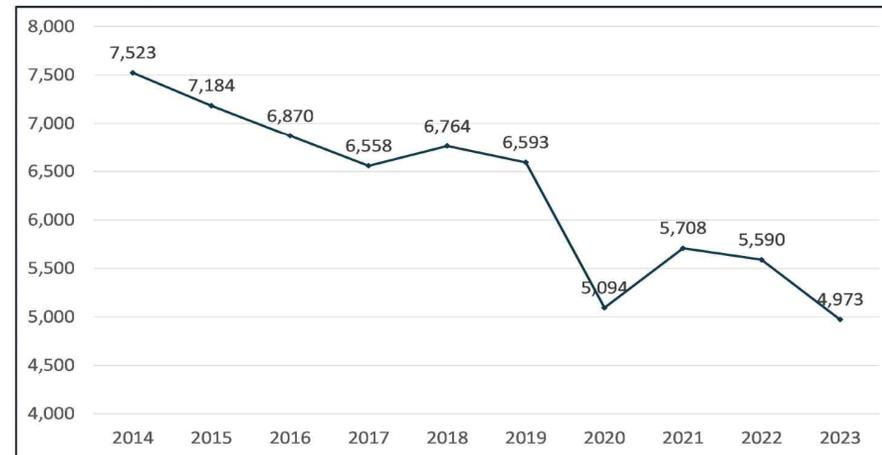
(b) 목사 수



(c) 목사 수



(d) 전도사 수



4.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 분석

사례비 격차의 원인 2) 사례 체계(compensation system)의 부재

- 우리나라의 경우 교계 차원에서 목회자의 사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사례비 수준과 범위 사례비 지급 규정 등을 모두 개(個)교회 차원에서 정함. → 이로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

① 사례의 개념이 좁아짐

- 사례의 범위는 다양하나(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 노후소득보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 ↔ 사례비)
개별 교회 차원에서 사례를 규정함에 따라 사례의 개념 자체가 '생활비'로 한정됨
- 재정자립도가 낮은 한국 교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생활비로 한정된 사례비 개념이 복지 차원까지 고려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② 사례비 지급이 불투명하고 모호함

- 사례비 지급 규정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하는 교회는 많지 않음 → 대형교회 목사들의 각종 비리 문제로 연결
- 재정 집행 과정에서의 공사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 (목회자의 개인적 지출 vs. 교회의 공적인 지출)

5. 결론 및 시사점

바람직한 사례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투명성 제고

- 사례 체계를 명문화하고, 이를 모두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함
 - → 비리 문제 개선, 공사 구분의 모호함 개선, 재정집행 과정의 비효율 개선
- 교단 차원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가이드 라인이 필요 → 사례비 격차 해소에도 기여
 - 영국의 감리교(the Methodist)와 연합개혁교회(United Reformed churches) 등은 모든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표준 사례비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대다수의 목회자에게 비슷한 수준의 사례를 제공(Smith, 2014: 478).

- 필요 우선의 원칙 수립

- 목회자의 목회 활동에 대한 지원은 교회의 의지가 아닌 의무임(Boyo, 1994: 80)
 - 이는 목회자의 직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모든 직급의 목회자가 온전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사례가 지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기본급 + 수당’ 형태의 사례비 지급의 예) 만일 자녀가 없는 담임목사 부부와 자녀가 있는 부목사 부부가 있다면, 부목사에게만 자녀의 수, 연령에 따른 양육 수당을 지급

5. 결론 및 시사점

-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사례 체계 확립

-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사례 체계 논의 및 구축 필요

- '사례비'만으로는 사회적 위험 대처가 어렵기 때문
- MMBB는 노후소득보장, 사회보험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

※ 사례비(cash compensation), 주택/사택 보조금(Housing Allowance), 의료보험, 퇴직급여 등의 각종 수당(Benefits) 등을 포함

MMBB가 제시하는 사례 체계 예시

A Sample \$75,000 Compensation Package	
Cash Compensation	
Cash salary	\$30,000
Housing allowance	20,000
Social Security offset	3,800
Equity allowance	5,000
Benefits	
Retirement, plus life and disability insurance	4,400
Health insurance	10,000
Reimbursement for Job-Related Expenses	
Auto allowance	650
Conventions	400
Hospitality	250
Subscriptions/books	200
Continuing education	300
TOTAL:	\$75,000

자료: MMBB. (2021). Guide to Negotiating Pastor Compensation.

5. 결론 및 시사점

향후 과제

- 교단 및 교회들 간 협력 체계 구축(McMillan and Price, 2003: 20)
 - 각 교단과 교회가 협력하여 재정적 지원, 정보, 목회자 공유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목회자와 여타 가계의 지출 구조 분석 必
- 목회자의 소득분포 및 사회보장 실태 파악 필요(국세청 소득제 자료와의 가명정보 결합)
- 사회보장 체계와 목회자의 사례 체계의 연계

참고문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5). 『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사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조사결과 기초보고서, 한국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 2015 교회의 사회적책임 심포지엄 자료집.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7).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1회기 총회 보고서』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기 총회 보고서』
- 유희원, 한신실. (2016). 성직자 노후보장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국민연금연구원.
- 이용하. (2003).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정책방향.” 『연금포럼』. 2003(4). 23-31.
- 통계청. (2023.12.7.).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 Boyo, B. (1994). A Church's Responsibility to Support its Pastor. *Africa Journal of Evangelical Theology*, 13(2), 67-85.
- Hartzell, Jay, Christopher Parsons, and David Yermack. (2010). “Is a Higher Calling Enough? Incentive Compensation in the Church.” *Journal of Labor Economics* 28(3): 509-39.
- Harvey, A. E. (1982). The Workman is Worthy of His Hire: Fortunes of a Proverb in the Early Church. *Novum Testamentum*, 24(Fasc. 3), 209-221.
- Hudnut-Beumler, James David. (2007). In pursuit of the Almighty's dollar: A history of money and American Protestantism.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McMillan, B. R., and Price, M. J. (2003). How much should we pay the pastor? A fresh look at clergy salaries in the 21st Century. Durham, NC: The Divinity School at Duke University Pulpit & Pew Report Series.
- MMBB. (2021). Guide to Negotiating Pastor Compensation.
- Schleifer, C., and Chaves, M. (2016). The Price of the Calling: Exploring Clergy Compensation Using Current Population Survey Data.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5(1): 130-152
- Smith, Ian. (2014). Religious Labor Markets. In Oslington, Paul.(Ed.)(2014). *The Oxford Handbook of Christianity and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 Trawick, M. W., and Lile, S. E. (2007). Religious market competition and clergy salary: Evidence from SBC congregations in the Sout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66(4), 747-763.
- Zaidi. A., M. Evandrou, J. Falkingham, P. Johnson, and A. Scott (2009). “Employment Transitions and Earnings Dynamics in the SAGE Model”, Chapter 14 in Zaidi, Ann Harding and Paul Williamson (Eds.), *New Frontiers in Microsimulation Modelling*, Ashgate.

감사합니다.



[발제2.]

한국 목회자 사례비 표준에 대한 요구와 실제적 대안

신동식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 빛과소금교회)

서론

90년대에 성도 15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사례비가 10만원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시기이기에 사례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혼자였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역하는 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첫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를 옮겼습니다(93년). 100명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례비는 40만 원대 였습니다. 세 번째 사역한 교회는 600명 정도였습니다(95년). 이곳에서는 결혼을 하였고 가정이 생겼습니다. 이때 교육전도사 사례비는 5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강도사로 인허 받고 전임사역을 하였을 때 85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역지를 갔습니다(2001). 재직 성도가 3천명이었습니다. 이때 사례비는 전임으로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는 50만원대 였습니다. 2004년에 개척을 하고 후원금을 통한 사례비가 50만원이었습니다. 세례 교인 15명이 되어 교회 설립이 되고도 사례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때 노회로부터 월 10만원의 재정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퇴직금은 불가능하였습니다. 6년이 지난 후에 목회자 세금을 신고하면서 연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노회와 한 교회에서 2년 동안 40만 원을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를 후원하였습니다. 이 돈을 퇴직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였던 동역자들이 퇴직할 때 전액 퇴직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개 교회마다 규모에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 교회(같은 노회, 타 교단)의 재정입니다. 한번은 사역하는 교회에서 전도사의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대체 이러한 사례비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질문했을 때 당시 재정을 보셨던 담당자가 말하기를 노회에 속한 교회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 교회는 아주 사례비에 야박하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어디에도 사례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규정은 규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론으로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규정이 개교회의 상황에 따라 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는 14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여전히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교회들은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표준을 가지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매우 성숙하였습니다. 사회에서 열정페이는 더 이상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급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기준이 없습니다. 목회자 세금 문제에 반발하였던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당연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표준 사례비에 대하여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한국 목회자 사례비 표준에 대한 요구와 실제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다시금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본론

1. 목회자 사례비 재정의 필요성

1) 공교회성 회복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교회는 지독한 개교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회 의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공교회 의식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개교회 독립채산제입니다. 여기에 자본주의 승리주의가 매우 강합니다.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지만 교회의 생존은 오로지 개교회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목회자의 사례비 격차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시적 직업을 겸하는 많은 목회자가 존재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공교회를 말하지만 지독한 계급이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사례비는 교회의 하나 됨을 회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보편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지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교회를 죽여야 하는 자본주의 교회로 변모하였습니다. 오직 각자도생만 존재하는 끔찍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았다가 현실의 상황으로 떠나야 하는 사역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보편교회로서의 회복을 위하여 목회자의 사례비 기준은 중요합니다.

2) 건강한 목회 생태계 유지

교회 청빙을 받든, 개척을 하든 사례비 책정의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담임목사만이 아닙니다. 부목사(동역)와 교육 목사와 전도사의 청빙에도 동일합니다. 대부분 개 교회의 관례대로 사례비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연수와 관계없이 사례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정직하고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니라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건강한 목회 생태계를 유지 할 수 없습니다. 예측이 가능할 때 목회 생태계는 건강해집니다.

특별히 개척하는 목사들은 자신들의 사례비를 어떻게 책정할지 고민합니다. 개교회는 사역자들의 사례비의 기준도 모르고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규모의 교회들이 어떻게 사례비를 주는지 참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역할 때와 가정이 있을 때를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 다 호봉이 있음에도 사역자의 영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쓰면 사례비 지출이 많을까 봐 사임시키고, 다시 뽑아서 본래의 사례비로 새로 시작하는 꼼수도 존재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건강한 목회가 무너지면 건강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목회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표준 사례비는 제정되어야 합니다.

3) 상생하는 교회 생태계 존속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상당수 침체기에 젖어 들었습니다. 신학교의 미달도 한국교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셋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셋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큰 강도 마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셋강을 살리는 것은 큰 강을 존속하게 합니다. 지역의 작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한국 교회 전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생존 자체가 힘듭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목회자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상생하는 한국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사례비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4) 목회자의 동등성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례비의 규모에 따라 사역자의 인식이 달라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정글입니다. 사역의 연수와 나이와도 관계없고 교회의 규모와 사례비의 차이에 따라 큰 목사와 작은 목사가 분리됩니다. 교인들의 이러한 천박한 인식은 천박한 목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목회의 비전이 큰 교회를 이루는 것에는 큰 교회가 주는 사례비의 풍족함과 교인들의 천박한 존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단 정치의 현장에서도 큰 폐해를 가져옵니다. 종교개혁의 원리에서는 총회는 가장 존경받는 이들이 모여서 교단의 신학과 이단의 침투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총회는 대형교회 목사와 엄청난 돈이 투자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총회장에 나오기 위하여 교단에 기부하는 돈은 작은 교회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총회가 가진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 정상적인 총회 정치 회복을 위해서라고 표준 사례비가 필요합니다.

5) 다음 세대 사역자의 행복

각 교회마다 젊은 사역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경제적요소가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의 목회자는 민주화 이전 세대와 민주화 이후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자연스러운 시대와 가난이 꼴찌로운 시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 소명으로 인식되던 시대와 열정페이를 죄라고 인식하는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는 퇴직금으로 싸우고 있고, 젊은 세대는 사례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교회는 젊은 사역을 찾지 못하고, 젊은 사역자는 목회자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들의 행복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사역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표준 사례비 책정은 필요합니다.

2. 표준 사례비의 모델 고찰 : 미션 디모데

미션 디모데는 프랑스 위그노의 후예들입니다. 현재 프랑스 남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들의 영적 대부흥(1918-1939)은 세벤느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세벤느 개신교 연합이 결성되었다가 1972년 미션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미션 디모데의 신학적 정체성은 그들이 믿는 신앙고백서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프랑스 신앙고백서(위그노 신앙고백서)를 따르면서 유아세례보다는 성인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하여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1) 미션 디모데의 재정 원칙

미션 디모데의 재정 원칙은 이들이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에 있어서 작은 교단이기 때문에 수월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 헌금 원칙 : 헌금은 전부 무명으로 드립니다(고후9:7).
- (2) 예배 시 헌금시간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교회 성도가 본부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가 성도들의 헌금 액수를 알 수 없게 하였습니다.
- (3) 재정원칙은 철저하게 믿음선교(FAITH MISSION)를 따르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강조는 전혀 없습니다.
- (4) 본부로 모인 헌금은 미션 디모데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사례비에 사용됩니다.
- (5) 미션 디모데는 목사의 후원금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담임목사에게 한 회사가 지원을 하면 그만큼 사례비는 삭감하여 받습니다.
- (6) 자동차는 공유하고, 공동주거단지를 형성하여 지내게 합니다. 독립적 공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7) 미션 디모데의 개혁적인 모습은 전체 사역자의 사례비는 동일합니다.
- (8) 사례비의 기준은 프랑스 노동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1,190유로(2019년) 한 화 180만 원 정도입니다.
- (9) 미션 디모데는 목회자에게 표준 사례비 외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지원과 미션 디모데 소유 차량 지원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 (10) 미션 디모데는 정부가 주는 복지 혜택 등이 사례비에 추가 됩니다. 복지 혜택은 사례비와 별도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1) 미션 디모테의 사례비 평균은 한화 230만 원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 (12) 미션 디모테는 목회자의 다른 직업을 허용하고 목회자가 직업이 있을 경우 사례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면 일정부분 보전하여 지급합니다.

3. 미션 디모테의 사역자

- 1) 사례비 재정이 동등함으로 존재가 동등함을 보여줍니다. 사역에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 큰 목사 개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 2) 일반적으로 사역자들이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핍절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불편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3) 미션 디모테의 사역은 프로젝트 중심이 아닙니다.
- 4) 교회는 큰 재정을 드리는 일을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부동산에 가급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 6) 미션 디모테는 재정이 생기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7) 대출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으나 대출이 앞서지 않습니다.
- 8) 기도가 재정보다 항상 앞섬을 강조하고 실천합니다.
- 9) 현금이 본부로 모이므로 목사 간의 경쟁, 교회 간의 경쟁이 없습니다.
- 10) 현금의 외부공개는 하지 않지만, 정부가 세운 재정원칙을 충실히 지킵니다.
- 11) 재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전체 사역위원회를 통하여 보고되고 조정됩니다.

4. 한국 교회에 적용

- 1) 한국 교회에 미션 디모테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션 디모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한국교회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교회는 공동체적 동역이 관계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입니다. 교회가 크면 더 받는 구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직분의 관계에 합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2) 미션 디모테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은 표준 사례비입니다.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은 표준 사례비가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잠 30:8). 한국교회가 자본주의에 의하여 점령당하여 정체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여기에 목회자 사례비의 양극화가 한몫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미션 디모테를 통하여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지 지점은 표준 사례비입니다.
- 3) 한국교회 목회자의 표준 사례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지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다양한 요소가 가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제안은 교회와 직분의 소명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5. 한국교회에 제안하는 목회자 표준 사례비

1) 목회자 사례비의 기준은 초임 교사 수준

교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목사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준상 비교할 수 없지만 잠언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초임 교사의 연봉은 3663만원입니다. 본봉은 2,247,400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어서 2,832,430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세금과 연금 공제비를 빼면 실수령액이 2,309,160원입니다.¹⁾ 초임 교사의 연봉은 초임 목회자의 표준 사례비 산정에 좋은 도움이 됩니다.²⁾

2) 목회자의 평균 사례비 산정

(1) 초임 목회자(전임)의 평균 사례비는 연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수령액은 본봉 2,300,000원 + 교육훈련비(도서비, 활동비) 200,000, 자녀수당 30,000, 상여금 1,200,000 포함 연 31,560,000원입니다. 월 수령액 2,630,000원입니다.

(2) 연 5만 원의 호봉과 가족수당 1인 3만 원을 제시합니다. 호봉은 안수 받고 전임 사역을 한 연 수입입니다. 안수 받았으나 사역이 없다면 호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단, 자녀가 성년이 되면 가족 수당은 없습니다. 그 외 수당은 표준 사례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안수 후 사역 2년 + 자녀 1명 = 2,730,000

안수 후 사역 10년 + 자녀 1명 = 3,130,000

안수 후 사역 30년 + 자녀 1명 = 4,130,000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 보험 후 2대 보험) 퇴직금은 일시불과 월 지급 방식을 정하면 됩니다.

(4) 목사 안수 받고 전임사역을 시작하는 모든 목사의 표준 사례비입니다. 이것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기준입니다.

(5) 전임 전도사와 교육 목사 그리고 교육 전도사의 사례비 표준도 필요합니다.

(6) 전임 전도사가 신대원 출신이라면 본봉은 2,250,000원입니다. 졸업 후 강도사 고시 후 목사 안수까지 1년입니다. 여기에 활동비 200,000 가족수당 30,000(1인 기준), 상여금 1,200,000 포함 총 연봉 30,960,000 월 2,580,000 원입니다. 사회보험료(4대보험 후 2대 보험) 지급합니다.(가족수당은 결혼 유무에 달라집니다.)

(7) 신학대학 졸업이면 2,100,000+활동비 200,000 + 가족 수당 30,000, 상여금 1,200,000 연 29,160,000, 월 수령액은 2,430,000원입니다. 사회보험료(4대보험 후 2대 보험) 지급합니다.

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100962>

2) <https://m.cafe.daum.net/shm16/Us28/4382?q=%EC%B4%88%EC%9E%84%EA%B5%90%EC%82%AC+%EC%97%B0%EB%B4%89>

- (8) 교육목사는 본봉 2,000,000입니다(토, 주일 근무). 연 24,000,000입니다. 사회보험료(4대보험
혹 2대 보험) 지급합니다.
- (9) 교육 전도사는 특수 상황입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등록금을 포함하여 계산되어
야 합니다. 등록금 6,000,000+12,000,000 총 연봉 18,000,000입니다. 등록금 제외 월 본봉
은 1,000,000 . 사회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임목사 : 월 2,630,000
- 전임전도사 : 월 2,580,000(신대원), 월 2,430,000(대학)
- 교육목사 : 2,000,000
- 교육 전도사 : 1,000,000(등록금 제외)

6. 목회자 표준 사례비를 위하여 교회가 할 일

- 1) 어려운 표준을 정했다고 실천되는 것을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표준이 없어서 더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표준이 필요합니다.
- 2) 표준 사례비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출 수 없
습니다. 이에 교회의 할일이 중요합니다. 앞서 제시한 표준 사례비에 근거하여 교회의 역할입니
다. 그동안 교회는 다른 직종과 달리 사례비의 규정도 호봉도 없이 주먹구구였습니다. 이제 힘
들지만 정리가 필요합니다.
- 3) 우선 교회는 표준 사례비를 기준으로 다시 사례비 책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역자들 역시 교회의 상황에 합당하게
서로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표준이 없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오해가 많았습니다.
이제 오해가 아니라 진정한 공생공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 4) 목회자는 어려운 상황이면 기다려주고, 교회는 최대한 표준 사례비를 맞춰야 합니다. 교회는 종
교개혁의 정신에 따라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우선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건강성과 생명성
을 위하여 목회자의 표준 사례비는 중요한 기점입니다.

7. 목회자 표준 사례비를 위하여 노회가 할 일

표준 사례비 문제에 있어서 노회(지방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로 세움을 받고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노회(지방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각자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를 강조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본주의 성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의 시기에는 힘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쇠퇴의 시기에는 무서운 해가 됩니다. 지금은 교회의 쇠퇴기입니다. 그러므로 노회(지방회)가 본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1) 미래 자립교회 기금 만들기

미래 자립교회를 실질적으로 돕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회(지방회)의 재정이 좀 더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각 노회(지방회)가 미래 교회를 위한 자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총회의 연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연금은 긴 기간을 적립하여 은퇴 후를 생각하는 것이라면 미래 자립교회 자금은 매년 지출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크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회마다 1억씩 적립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개 교회 중심으로 작은 교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와 개 교회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고 성경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은 개 교회의 후원을 노회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노회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규칙과 세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목적에 따라 집행한다면 더 효과적인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개교회가 후원하는 것은 노회의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사례비와 은퇴비 모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 교회는 상회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이러한 기금을 만든다면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회가 가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됩니다.

2) 표준 사례비에 부족한 부분 채워주기

개 교회의 어려움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노회(지방회)의 실사와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는 방향은 틀리지 않습니다. 노회(지방회)는 10년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목회자를 도와야 합니다.

개 교회의 상황이 다른 만큼 사례비의 지출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례비의 부족한 부분 역시 다릅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동일하기에 노회(지방회)는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노회(지방회)에 전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이때 안정적으로 성장한 교회의 도움이 함께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표준 사례비 230만 원(본봉)에서 교회가 160만 원 밖에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면 70만 원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노회가 미래 자립 기금을 마련하였음을 전제합니다. 기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면 노회가 35만 원을 후원하고 연결된 교회가 35만 원을 후원하여서 부족한 70만 원을 채우는 일입니다. 물론 앞서서 강조하였듯이 개교회가 모든 노회에 기금을 통하여 진행된다면 노회가 부족분을 채우면 됩니다.

이보다 다양한 모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논의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3) 주택 청약 10년 후원하기

사실 표준 사례비로는 살아가기에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후 문제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쉬운 해결이 있지도 않습니다.

표준 사례비가 정착되려면 주택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30년 전만 하여도 주택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삶의 일 순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목회자와 교회도 예외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미션 디모데처럼 주택이 주어지고 공동생활이 어느 정도 된다면 사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준비하는 것은 청약저축입니다. 노회가 청약저축 10년 후원하기를 통해서 임대 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 등을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자립하는 교회가 있다면 중단하고 자립된 교회가 또 도와주는 선순환 관계가 된다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4) 목사를 노회 회원으로 받을 때 주택 청약 통장 선물하기

노회(지방회)가 마음을 먹고 준비한다면 가능합니다. 특별히 한 노회에 속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의 섬김이 있다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저도 개척 초기에 노회와 교회에서 2년 동안 크게 후원하였기에 교회를 끝까지 세우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목사는 노회(지방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회의 회원이 됩니다. 이 영광스럽고 기쁜 미래의 한국교회를 짊어질 이들을 위하여 주택통장을 선물하기를 제안합니다. 시작과 함께 미래를 선배들이 함께한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 국민연금도 전도사 시기부터 넣어 준다면 매우 좋습니다.

사실 초보 목회자는 열정은 있지만 경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10년뒤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때 앞서서 걸어갔던 노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하여 첫 시작과 함께 전달한다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역을 잠시 쉬어도 연금과 청약저축이 살아있기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해결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의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은 노회가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5) 사례비가 적어도 70%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개척과 목사 파송을 막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교단마다 다른 상황이지만 한국교회가 장로교가 많기에 표준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현재 장로교회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 세례교인 15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처로만 존재합니다. 세례교인 15일을 강조한 내면에는 목사의 사례비와 교회의 운영이 문제가 없음을 전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교인이 중고등부 이상이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임목사는 교회가 사례비를 감당하겠다고 선서를 통하여 세워집니다. 이것은 교회 설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개척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례교인 15명과 함께 사례비가 적어도 70%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개척과 파송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척을 허용하면 적어도 5년 동안은 노회가 사례비의 일정 부분을 채워줄 때 허락해야 합니다.

노회의 역할은 교회의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논의한 것은 목사를 임직한 노회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목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이 교회를 세워도 노회와 함께하는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독립교회의 현실을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립교회 역시 기준이 없어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회가 가진 본래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한국 교회는 보편교회로서 새로워질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결론

한국교회 목회자 사례비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불가능한 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역의 차이와 규모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50년 전의 한국의 현실과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담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핸드폰만 해도 나가지 않을 돈이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본다면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의 한 복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금 사역의 자리를 바로 세우고 무너지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정글의 논리가 작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금 돌아보고 표준 사례비를 공교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발제를 통하여 깊이 생각하고 교회도 살고 사역자도 살고 한국사회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발제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논의의 시작입니다. 동시에 개 교회의 상황에 따라 수정과 첨삭이 필요합니다. 표준 사례비는 전체적으로 청빙과 퇴직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동역합의서를 통하여 잘 정리된다면 적어도 돈으로 인하여 부끄러워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첫 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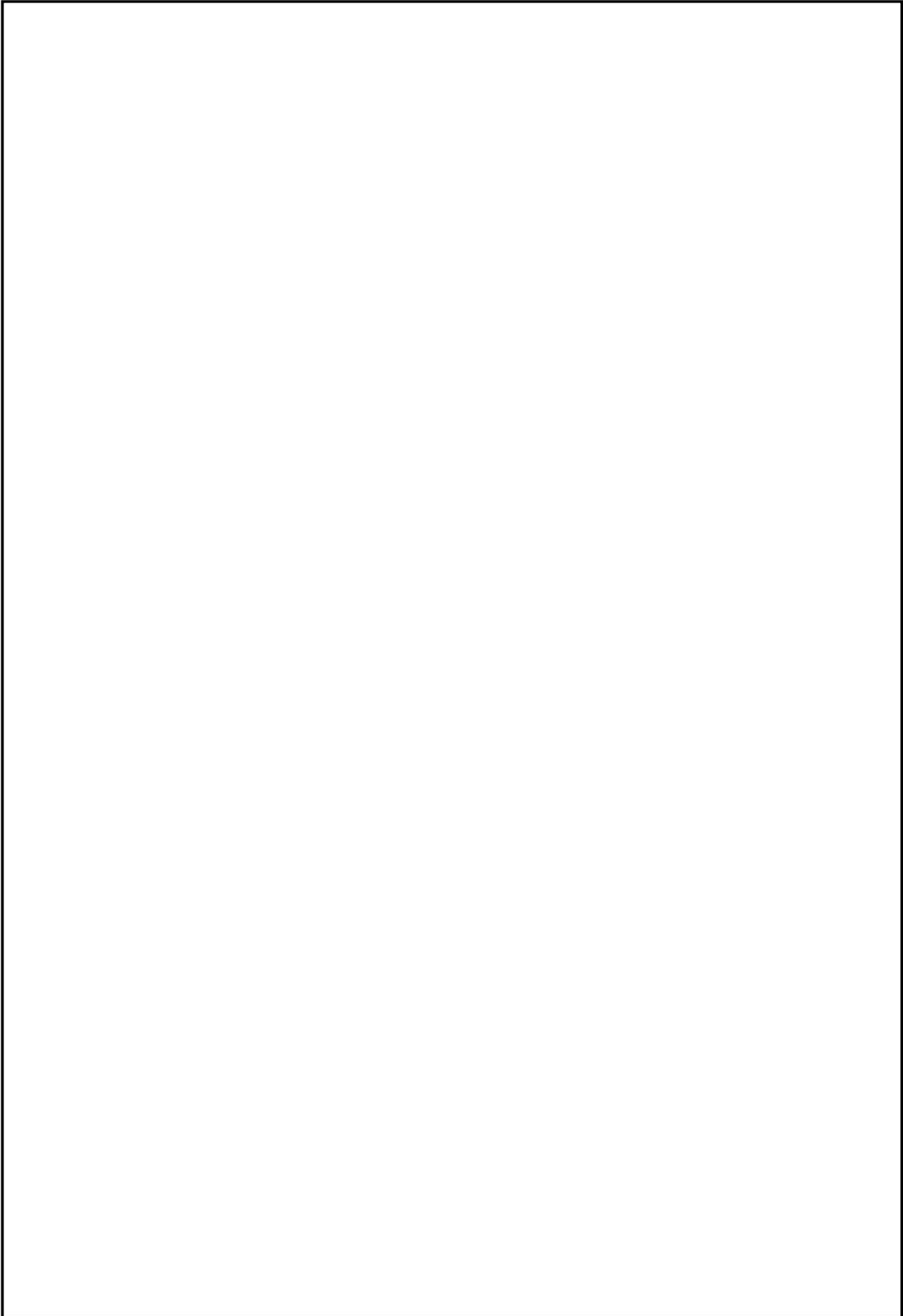
이제는 늦출 수 없습니다. 교단이 말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그 첫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적인 원리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 30:7-9)”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1-13)“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서로’와 ‘피차’로 표현된 쌍방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이다.”

기
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